

일 | 러 | 두 | 기

1. 교정항목별 수수료표상에 기재된 측정기의 권장 교정주기는 측정기의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“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”에서 정한 주기를 나타낸 것으로, 사용하고 있는 측정기의 정밀정확도, 안정성, 사용목적,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<

적용예시 >

사용하는 계량·측정기의 권장 교정주기가 12개월로 정해져 있더라도, 1일 10회 이상 많이 사용하는 경우 3개월 주기, 1일 2회 ~ 3회 정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 주기, 월 4회 ~ 5회 사용할 경우 12개월 주기로 교정하는 등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이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량·측정기의 오류로 회사제품에 영향을 줄 경우 불량품 양산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증대되기 때문입니다.

2. 교정수수료는 기본 수수료와 추가기준(교정대상기기의 난이도, 정밀도, 교정서비스 정도에 따라 부가되는 기준)에 의한 추가 수수료와 표준 소급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.

가. 계량·측정기의 교정수수료 = 기본 수수료 + 추가 수수료 + 표준소급비

나. 기타경비 : 출장교정인 경우의 출장비, 수리가 필요한 경우의 수리비 등은 공인교정기관과 고객이 합의한 금액으로 별도 부과됩니다.

3. 표준소급비는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사업의 대가로 국가 표준기본법시행령 제18조 및 계량에관한법률 제65조에서 규정한 정부 업무의 위탁 또는 지정하는 사업에 사용되어, 공인교정기관의 교정능력 향상 및 산업체의 측정기의 정밀정확도 유지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.

- 측정의 정밀·정확도 향상을 위한 교육·조사·연구, 자료발간,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업
- 교정방법, 절차의 개선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
- 공인교정기관의 인정 평가에 관한 지원사업 및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업
- 계량·측정기의 기술기준 및 「산업표준화법」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규격 개발·보급에 관한 사업
-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계량기·측정기의 제품인증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·검사기관의 인정에 관한 사업
- 계량·측정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관련 단체와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
- 기타 측정의 정밀·정확도의 향상을 위한 사업

4. 개정된 교정항목별 수수료표는 2023. 7. 1. 부터 적용하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정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1년마다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